

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서(신고증명서)

※어두운 난(■)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7일
------	------	------	----

신 고 인	개인사업자 []	성명	생년월일
	법인사업자 []	법인명(상호)	법인등록번호
	① 주소(주 사무소 소재지)		전화번호 (유선) (휴대전화)
			전자우편

②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		③민간임대주택의 종류		④주택 유형	⑤전용 면적 (㎡)
건물 주소	호 번호 또는 층				
		공공지원 [] 장기일반 [] 단기 []	건설 [] 매입 []		
		공공지원 [] 장기일반 [] 단기 []	건설 [] 매입 []		
		공공지원 [] 장기일반 [] 단기 []	건설 [] 매입 []		
		공공지원 [] 장기일반 [] 단기 []	건설 [] 매입 []		
		공공지원 [] 장기일반 [] 단기 []	건설 [] 매입 []		
		공공지원 [] 장기일반 [] 단기 []	건설 [] 매입 []		
합계					
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2조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12에 따라 위와 같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
특별자치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뒤쪽 참고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	--------

위와 같이 임대차모집 신고를 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
특별자치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

신고인 제출서류	1.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임차인 모집계획안 가. 민간임대주택 공급 현황 및 임대 조건 나.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 다. 토지임대계약서·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확보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민간임대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만 해당한다) 라. 토지 및 주택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2. 신고대상 주택이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9조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 증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증계약의 보증서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민간임대주택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	

작성방법 및 유의사항

- ①신고인의 주소란에는 신고일 기준으로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적습니다. 임대사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등록지로 자동 갱신됩니다.
- ②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란에 민간임대주택의 도로명주소(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만 지번주소)를 적고, 호 번호 또는 층란에는 각 호·세대·실(室)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층 또는 호를 적습니다.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을 제외한 나머지 실만을 적을 수 있습니다.
- ③민간임대주택의 종류란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,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 중 하나에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하고, 건설임대 또는 매입임대 중 하나에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- ④주택유형란에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는 건축물의 용도로서 단독주택, 다가구주택,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오피스텔, 기숙사(일반기숙사 또는 임대형기숙사)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.
- ⑤전용면적란에는 해당 주택의 실제 전용면적을 적습니다.
-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2조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12에 따라 임차인 모집을 하는 임대사업자는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,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,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67조제2항제1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처리절차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